의안번호	제 277 호
의 결 연 월 일	2008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08 년 월 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277

제출연월일 : 2008년 월 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이유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건설기계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부분정비업 시설기준 등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동차부분정비업을 등록한 자에 대한 시설기준 변경 (안 제6조제1항제1호)

○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을 등록한 자 중에서 가스사용자동차를 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시설기준 및 작업기준을 신설 (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 자동차폐차업자에 대한 가스사용자동차의 폐차를 위한 시설기준 및 작업기준을 신설 (안 제7조제1호)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련법령 발췌 : 붙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07. 6. 7 건교부령 제560호)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07. 8. 17 건교부령 제576호)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건설기계정비업신고기준”을 “건설기계정비업등록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 LPG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 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라 한다)는 별표 2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는 별표 2에 의한 작업기준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임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안전교육(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가스시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자 임명 및 교육이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3의 시설 및 작업기준

제8조 본문 중 “별표 3”을 “별표 4”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마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1]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제6조제1항 관련)

구분 \ 업종별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부분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
사업장 면적(㎡)	작업장·검차장사무실부품창고 등의 총면적	1천이상	400이상	100이상 (인구50만이상도시는70이상)	300이상
시설 및 장비	1.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	○	○	
	2. 체인부록(1톤이상)				○
	3. 도장작업시설(스프레이건포함)	○	○		
	4. 부동액회수재생기	○	○	○	○
점검·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	1. 제동시험기	○	○		
	2. 전조등시험기	○	○	○	
	3. 사이드슬립측정기	○	○		
	4. 속도계시험기	○	○		
	5. 일산화탄소측정기	○	○	○	○
	6. 탄화수소측정기	○	○	○	○
	7. 매연측정기	○	○	○	○
시험기 및 측정기	1. 연료분사펌프시험기	○	○		○
	2. 노즐시험기				○
	3. 압력측정기	○	○		○
	4. 회전반경측정기	○	○	○	
	5. 휠밸런스	○	○	○	
	6. 토인측정기	○	○	○	
	7. 캠버캐스터측정기	○	○	○	
	8. 전자식엔진종합시험기				○
공작기계	1. 실린더보링머신				○
	2. 실린더호우닝머신				○
	3. 밸브시트그라인더				○
	4. 밸브시트카터				○
	5. 크랭크연마기				○

주 : 1.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2. 도장 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가 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디젤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 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펌프 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동액회수재생기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는 시험기 및 측정기 중 휠얼라인먼트를 갖춘 경우에는 회전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8.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는 전조등 탈·부착 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조등시험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9.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는 가스자동차 정비시 가스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탈·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행한 후 정비하여야 한다.

[별표 2]

가스용기부속품정비업 시설 및 작업기준(제6조제3항, 제4항 관련)

1. 시설기준

시설기준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가. 용기내부의 잔가스처리(이송)설비	○	○
나. 잔가스 연소장치	○	○
다. 가스누출 감지기	○	○
라. 소화기	○	○

2. 작업기준

가.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가 없을 시에는 정비책임자)의 지휘·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는 장소는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는 장소 주위에는 작업에 필요한 것 이외의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부속품의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작업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마. 가스용기부속품을 분해하거나 떼어낼 때에는 용기내의 액체가스를 잔가스 처리설비에 의하여 완전히 회수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용기 내부에 들어 있는 기체상태의 가스는 잔가스 연소장치로서 완전히 연소시킨 후 용기 부속품을 분해하거나 떼어 내어야 한다.

바. 가스용기부속품의 정비작업이 끝난 후에는 정비작업을 실시한 부분의 가스설비에 대하여 가스누출 여부를 점검하여 누출이 있을 시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잔가스 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 연소장치는 1일 1회 이상 가스누출 감지기로 가스의 누출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아.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탈거할 경우에는 그 용기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3]

자동차폐차업시설 및 작업기준(제7조제1호 관련)

1. 시설기준

구 분		확 보 기 준
대지(작업장·야적장·사무실 등의 총면적을 말한다)		3천㎡ 이상
장 비	구 난 차(견인능력 3톤 이상)	1대 이상
	지 게 차(인양능력 3.5톤 이상)	1대 이상
	중 량 기(계량능력 20톤 이상)	1식 이상
	압 축 기(투입용적 10㎥ 이상)	압축기, 파쇄기, 전단기, 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파 쇄 기(가압능력 500HP 이상, 생산능력 매시간당 5톤 이상)	
	전 단 기(전단능력 800톤 이상, 처리능력 매시간당 15톤 이상)	
	용 해 로(용해능력 1회당 5톤 이상)	
가스 자동차 폐차 시설	용기내부의 잔가스 처리(이송)설비	잔가스 처리(이송)설비, 잔가스 연소장치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용기내부의 잔가스 연소장치	
	가스누출 감지기	1대 이상
	소화기	1대 이상

주 : 환경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동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별도로 얻어야 한다.

2. 작업기준

가. 가스자동차의 폐차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하여 가스자동차의 폐차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가스자동차를 폐차하는 작업장은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가스자동차의 폐차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작업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떼어낼 때에는 용기밸브를 완전히 잠그고 조심하여 떼어내어야 한다.

마. 가스용기를 떼어낸 후에는 내부의 액체가스를 잔가스처리설비로 완전히 회수하거나, 잔가스연소장치에 의하여 완전히 연소시킨 후 용기를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바. 가스용기를 폐기(절단)할 경우에는 용기밸브를 열고 가스누출감지기로 내부의 잔가스가 완전히 제거된 것을 확인한 후 폐기(절단)하여야 한다.

사.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연소장치는 1일 2회 이상 가스누출감지기로 가스의 누출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별표 4]

자동차폐차 영업소 시설기준(제8조 관련)

구 분		확 보 기 준
대지(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포함하여야 한다)		300㎡ 이상
장 비	중 량 기(계량능력 10톤 이상)	1식 이상
	고철운반용자동차(최대적재량 2톤 이상)	1대 이상
	지 게 차(인양능력 3.5톤 이상)	1대 이상

주 : 폐차영업소에서는 자동차를 폐차할 수 없으며, 폐차의뢰의 접수 및 폐차의 수집에 전용하여야 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생략) ②「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신고기준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
〈신 설〉	③ 제1항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 LPG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는 별표 2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는별표 2에 의한 작업기준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하고,「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임명하여야 하며,같은법 제23조에 의한 안전교육(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가스시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자 임명 및 교육이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자동차폐차업의 등록기준) (생략)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 ~ 3. (생략)	제7조(자동차폐차업의 등록기준) (현행과 같음) 1.별표 3의 시설 및 작업기준 2.~ 3. (현행과 같음)
제8조(폐차영업소의 설치) 폐차업자가 폐차의뢰의 접수 및 폐차의뢰되는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3의 자동차폐차영업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폐차영업소의 설치) ……별표 4……

관련법령 발췌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등) ①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9.4.15>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교통·환경오염·주변여건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9.4.1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①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6.30, 2007.6.7>
1.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
2. 소형자동차정비업 :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
3. 자동차부분정비업 :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장치에 대한 점검·정비
4.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정비대상 자동차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정하여 정비업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1.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2. 자가 정비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개정 2007.4.6>) ①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2007.4.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7.4.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을 폐지하여야 한다.<신설 1999.12.28, 2007.4.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등록증의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7.4.6>[시행일:2007.7.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개정 2007.8.17>)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정비대상을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말한다)의 등록기준을 별표 15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으로 본다.<개정 1997.4.7, 2001.8.4, 2007.8.17>[시행일:2007.8.17]

[별표 15] <개정 2007.8.17>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제61조관련)

구분	명 칭	제원등	종별내역			
			종 합	부 분	전 문	
					원동기	유 압
대지 및 건물	1. 옥내작업장면적	사무실, 작업장, 공작실, 부속창고 등	1,0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이상	495제곱미터이상	230제곱미터이상
	2. 옥외작업장면적	작업장, 주기장등	1,460제곱미터이상	670제곱미터이상	330제곱미터이상	430제곱미터이상
부대시설	1. 체인블록 또는 호이스트크레인		5톤이상	2톤이상	2톤이상	1톤이상
	2. 트럭(이동정비용)	1톤이상	○	○	○	○
	3. 폐유처리시설	유수분리장치포함	○	○	○	○
	4. 검차대		○	○		
정비기계류	1. 트랙(링크)·프레스(임팩트렌치를 포함한다)	150톤이상	○			
	2. 트랙링크자동용접기		○			
	3. 롤러아이들러프레스	100톤이상	○			
	4. 롤러아이들러자동용접기		○			
	5. 롤러아이들러연마기		○			
	6. 유압잭					
	7. 전기용접기	이동식 10톤이상	○	○		
	8. 선 반	10KVA이상	○	○		
	9. 공기압축기	1천200mm이상	○	○		
	10. 부품세척기	7kg/㎠이상	○	○		
	11. 실린더보링머신		○	○	○	○
	12. 라인보링머신				○	
					○	
검사시험기	1. 전조등시험기		○	○		
	2. 유압계		○	○		○
	3. 압축시험기		○	○		
	4. 제동시험기		○			

	5. 분사펌프시험기	15톤이상	○			
	6. 노즐시험기		○		○	
	7. 정 반		○	○	○	○
	8. 매연농도측정기	0~100%측정용	○			
	9. 속도계시험기	15톤이상 120km/h이상	○			
	10. 사이드슬립측정기		○			
	11. 조속기봉인기		○			
공구	1. 밸브시트커터		○		○	
	2. 밸브가이드리머		○		○	
	3. 토크렌치		○	○	○	○
기술자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이상		1인이상			
	건설기계정비기능사이상		2인이상	2인이상	1인이상	1인이상

비 고

1.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록기준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소속기술인력중 자동차정비기술자격과 건설기계정비기술자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정비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트럭에는 정비업체명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옥내작업장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야 한다.
4. 영 별표 2에 의한 부분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한 자가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대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대지 및 건물기준과 정비기계류중 1. 트랙(링크)·프레스(임팩트렌치를 포함한다) 내지 5. 롤러아이들러연마기를 제외한다.
5. 기술자중 건설기계산업기사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이상인 자로서 해당업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안전관리자) ①사업자등과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는 그 시설 및 용기등의 안전확보와 위험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또는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1995.8.4>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청(이하 "사용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1995.8.4, 1999.2.8, 2001.2.3, 2002.3.25>
⑧안전관리자의 종류·자격·인원·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영으로 정한다. <개정 1995.8.4>

제23조 (안전교육) ①사업자등·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수탁관리자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5.8.4, 2002.3.25, 2005.5.26>
②사업자등·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수탁관리자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은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1995.8.4, 2002.3.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5.8.4, 1999.2.8>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 ①건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의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나눈다.
[전문개정 2007.5.1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업종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업종과 각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03.8.2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관련)

구 분	건 설 업 종	업 무 내 용	건설공사의 예시
	27.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 제3종의 업무내용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 1.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2.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안전교육) ①액화석유가스의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에서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교육대상자"라 한다)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지침(행정사항) 요약】

☞ 당초지침 :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팀-1683호 (2007.6. 8)
추가지침 :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팀-2255호 (2007.7.27)

가. 자동차부분정비 작업범위 조정 및 표기방식 개선(제131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26 신설)

(1) 종전에는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를 정비작업을 할 수 있는 항목을 열거하는 형식으로 규정하였으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수 만여 개의 부품을 여러 개씩 덩어리로 묶어 모듈(Module)로 공급받아 만드는 자동차 제작기술에 비추어볼 때 정비작업을 할 수 있는 항목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으며, 정비작업을 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자동차정비업의 업종 간 다툼이 계속되어 소비자 이용에 불편이 있었음.

(2)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를 정비가능 항목을 열거하는 포지티브(Positive)방식에서 엔진교환, 엔진 분해정비, 실린더 블록의 분해정비 등 정비 작업을 할 수 없는 항목을 열거하는 네거티브(Negative)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그 외의 점검·정비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하게 탈·부착하는 작업 등은 가능하도록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나. 각 시·도는 다음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1) 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 확대에 따라 부분정비업자(기존 등록된 부분정비업자 포함)는 회전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 또는 3종 기능을 통합한 휠얼라인먼트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전조등 시험기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전조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에 명기

(2) 또한, 부분정비업자는 LPG자동차의 LPG가스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탈·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행한 후 정비 하여야 함